

6. 소아청소년 심장학 세부 전문의 자격 갱신에 관한 규정

[제 1 조] 목적

이 규칙은 [소아청소년 심장학 세부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] 중 소아청소년 심장학 세부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술기를 계속 유지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 갱신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제 2 조] 자격

1. 소아청소년 심장학 세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 년이 경과된 자로서 최근 5 년간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 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소정의 필수 교육을 매년 이수하고 평점을 도합 100 평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.
2. 만 65 세 이후는 평점 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.
3. 1 년 이상의 장기 해외 체류자의 경우는 해외 체류 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산하며, 해당자는 자격 갱신 연기 사유서(별지 제 19 호 서식)와 증빙 서류를 세부 전문의 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.

[제 3 조] 자격 갱신의 방법

1. 자격 갱신은 서류 전형으로 한다.
2. 세부 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개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장에게 보고하고, 이사장은 자격 갱신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세부 전문의 자격증을 갱신 교부하며, 교부 시에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[제 4 조] 제출 서류

자격 갱신을 원하는 자는 아래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시점의 1 개월 전까지 세부 전문의 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세부 전문의 자격 갱신 신청서 (별지 제 18 호 서식)
2. 소아청소년 심장학 세부 전문의 자격증 사본
3. 연수 평점 기록지 (별지 제 15 호 서식) 및 관련 증빙 서류
4. 연수 평점 이수 증명서 (별지 제 16 호 서식)

[제 5 조] 연수 교육의 인정 범위 및 평점 인정 기준

연수 교육의 인정 범위 및 평점 인정 기준은 [소아청소년 심장학 세부 전문의 학술 및 연수 교육에 관한 시행 규칙] 제 6 조 및 제 10 조의 규정을 따른다.

[제 6 조] 자격 갱신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

1. 소아청소년 심장학 세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매 5 년 마다 실시하는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세부 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, 이후 3 년 동안 자격 갱신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. 1 년 후에 신청하면 도합 120 평점을, 2 년 후에 신청하면 140 평점을, 3 년 후에 신청하면 160 평점을 이수하거나, 또는 최근 5 년 동안의 평점이 100 평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.
2. 3 년 동안 추가로 자격 갱신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부 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, 이후에는 세부 전문의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세부 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.
3. 자격 갱신의 기회를 상실한 자 가운데 세부 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자격 갱신의 기회를 다시 부여할 수 있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 후 승인받는다.

[제 7 조] 자격 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

1. 자격 갱신에 불합격한 자는 세부 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, 이후 3 년 동안 자격 갱신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. 1 년 후에 신청하면 도합 120 평점을, 2 년 후에 신청하면 140 평점을, 3 년 후에 신청하면 160 평점을 이수하거나, 또는 최근 5 년 동안의 평점이 100 평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.
2. 자격 갱신의 신청에서 추가로 3 년 동안 불합격한 자는 세부 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, 이후에는 세부 전문의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세부 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.

[부칙]

1. 이 규칙은 2006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2. 1 차 개정된 규칙은 2011 년 3 월 1 일부터 적용한다.
3. 2 차 개정된 규정은 2016 년 3 월 1 일부터 적용한다.
4. 3 차 개정된 규칙은 2019 년 11 월 16 일부터 적용한다.
5. 4 차 개정된 규정은 2020 년 6 월 25 일부터 적용한다.
6. 5 차 개정된 규정은 2021 년 8 월 24 일부터 적용한다.